기획재정부	보도자료		
보도일시	2018. 3. 30.(금) 10:00	배포일시	2018. 3. 30.(금) 8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재무경영과 문경환 (044-215-5630)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윤경원 (044-203-5150)	담당자	예우영 사무관 (044-215-5632) wyyeh@korea.kr 김은성 사무관 (044-203-5151) kes62@korea.kr

제6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개최
-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 보고 · 확정 -

□ 기획재정부는 3.30.(금) 오전 8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「**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**(이하 '공운위')」를 개최하였고,

○ 금번 회의에서 **산업부**가 **'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'**을 **보고·확정**하였음

□ 지난 3.8일 **제4차 공운위**에서 **산업부**는 **'광물자원공사 진단 및 처리방향'**을 **보고**한 바 있으며,

○ 그간 공운위 기능개선 소위, 정책자문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**기능조정 세부방안**을 마련하였음

□ **'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'**은 별첨과 같음

<별첨> 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
< 별 첨 >

※ 본 자료는 3.30(금) 10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보고안건

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

2018. 3. 30.

산 업 통 상 자 원 부

순 서

Ⅰ. 보고 배경 ····· 1

Ⅱ. 광물공사 현황 ····· 1

Ⅲ. 광물공사 부실원인 및 문제점 ····· 3

Ⅳ. 기능조정 세부방안 ····· 7

Ⅴ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12

Ⅰ. 보고배경

□ 산업부는 과거 해외자원개발의 객관적 실태 파악 및 부실원인·책임규명,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**"해외자원개발혁신 TF" 구성·운영중**('17.11.29~)

□ '18.3.5일 TF는 **자본잠식 확대, 채무불이행 위험이 제기**됨에 따라 **광물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,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**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

□ 3.8일, 산업부는 TF의 권고안을 토대로 **「광물공사 진단과 처리 방향」**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함

○ 4차례 **정책자문단 회의**(3.12, 3.14, 3.20, 3.26)를 통해 통합기관 검토 및 통합시 영향·효과, 자산·부채 이관, 인력·조직 조정, 자산매각 원칙 및 방식,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 등에 대해 심층 논의

○ 3차례 **기능개선소위**(3.8, 3.21, 3.28)를 통해 정책자문단 논의사항을 토대로 **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을** 마련

○ 산업부는 **해외자원개발 토론회**(3.28)을 개최하여 해외자원개발의 현황 및 문제점, **광물공사 기능조정 세부방안**에 대해 의견수렴

Ⅱ. 광물공사 현황

□ **(경영현황)** 광물공사는 지난 정부에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**부채규모 급증**('08년 0.5조원 ⇨ '16년 5.2조원), **완전자본잠식** 상태

○ '15~'17년 대규모 손상차손(3조원)에 따른 당기순손실(3.5조원) 누적

< 광물공사 재무상태 (단위: 억원) >

구분	'09	'10	'11	'12	'13	'14	'15	'16	'17
자산	16,498	23,963	29,418	36,247	52,206	58,520	46,875	43,658	41,518
부채	9,006	14,830	17,689	22,825	35,235	40,202	46,206	52,066	54,341
자본	7,492	9,133	11,729	13,422	16,971	18,318	669	△8,408	△12,823
당기순이익	213	230	327	△212	189	△2,635	△20,636	△9,874	△4,106

○ 볼레오, 암바토비 등 **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투자와 건설·생산 정상화 지연에 따른 투자비 급증, 수익 창출 지연** 등이 주요 요인

< 볼레오, 암바토비 사업 현황 (단위: 억불, 천톤) >

구 분	공사 기준('17)		프로젝트 기준('16)				생산량
	투자	회수	자산	부채	자본	순손실	
볼레오(동) (운영, 74%)	20.4 (보증 6.5)	1.8	11 (투자 26, 손상 15)	15	△4	△5.4	('15) 7 ('16) 14 ('17) 18 (설계 계획 30)
암바토비(니켈) (지분, 33%)	19.3 (보증 4.1)	0.2	54 (투자 82, 손상 24)	40	14	△4.5	('15) 47 ('16) 42 ('17) 35 (설계 계획 54)

○ **누적 회수액**(0.5조원)은 총 투자액(5.2조원) 대비 10% 수준에 불과하며, 확정된 **누적 손실액**(19.4억불)은 총 투자액 대비 41% 수준

□ **(구조조정)** 정부는 '16.6월, '**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***'을 수립하였으며, 이에 따라 광물공사는 자산매각**, 조직·인력축소 등 구조조정 이행중

* 해외자원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, 광물비축, 광업지원 등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 검토
** 小지분·非핵심사업은 조기에 매각, 주요사업들은 조기생산 정상화 후 매각

○ 그러나, 자산매각 등 구조조정 지연, **주요 사업의 생산 정상화 지연으로** 인해 **자본잠식 확대** 등 경영개선 성과 미흡

□ **(유동성)** 금년 이후 **차입금 만기 도래가 집중**된 상황에서 공사의 **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**로 신용등급 하락, 자금조달 여건 악화

○ 법정자본금 증액을 위한 **공사법안 국회 부결** 이후 5월 외화채(5억불) 등 금년중 총 7,403억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**유동성 위험이 제기**

○ 공사는 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자산 조기매각, 비용축소 등 **비상경영계획을** 수립('18.1.30)

Indus

Ⅲ. 광물공사 부실 원인 및 문제점

부실 원인

□ 자주개발률 등 정권 차원의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한 투자

○ 공사 주요임무로 자주개발률 기여도를 집중 관리('08~)

○ 중대형 사업의 동시 개발로 투자비 급증, 리스크 관리 실패

□ 경제성 평가 왜곡, 비효율적 의사결정으로 천문학적 손실 초래

○ 매장량, 생산량, 광물가격, 할인율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, 투자의사결정 왜곡

○ 기투자사업에 대한 손실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리한 지분 인수, 채무 부담, 증액 투자 등으로 손실을 확대

- 볼레오 : 운영사 부도 상황에서 국내 파트너사 합의없이 운영사 지분단독 인수, 프로젝트 채무(PF)를 공사 차입금 및 공사 보증채권으로 전환하여 모든 리스크를 부담
- 암바토비 : 프로젝트 건설비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주로서 운영사 견제 미흡, 운영사의 자금악화 상황에서 공사가 운영사에 금융지원, 결국 공사가 대지급

□ 부실자산 매입 이후에도 방만 경영, 관리 소홀로 부실을 더욱 악화

○ 재고관리, 구매계약, 세무관리 등 기본적인 경영관리 시스템 부재

- 자회사가 현지에서 구매한 수의계약액은 7억불에 달하며, 5만불 이상 대형 계약 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구매·조달 절차가 불투명
- 증빙자료(회계장부) 미비 등으로 멕시코 정부로부터 부가세 환급(78백만불)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관리 부실
- 황, 디젤 등 재고자산이 본사 및 자회사 간에 2배 이상 차이나는 등 재고자산 관리 부실

○ 생산설비 고장, 주가 하락 등을 장기간 방치하여 손실 확대

• 볼레오 : 단일배관으로 운전하다가 공정이 중지되고 나서야 이중배관 보완
• 캡스톤 : 1.8억불 주식매입 후 93%까지 주가하락할 때까지 방치

□ 과도한 차입 의존 및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보증

○ 사채발행 등을 통해 정부출자금의 3배 규모를 해외사업에 투자

○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으로 본사로의 부실 전이 위험

○ 채무 보증액은 청산 등 손절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

□ 이사회의 전문성·책임성 부족으로 공사 경영에 대한 견제 부재

○ '08년 이후 비상임이사(20명) 중 자원개발 전문가는 1명에 불과

○ 해외사업 관련 이사회 상정 안건(29건)들은 사실상 원안 의결

□ 부실 요인을 예방하고 사업부서를 감시하는 내부감사도 미약

○ 공사가 자체감사를 통해 부실사례들을 적발한 이후에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실이 지속 내지 악화된 측면

□ 기술·운영 능력 미흡, 조직·인력 확장에 집중

○ 축적된 역량과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한 사업 인수, 이후에도 기술인력 확보, 기술개발 등은 소홀해 생산 정상화 실패·지연

○ 기술·재무·법률 역량 부족으로 투자비 확대, 계약 변경 과정에서 주주로서 운영사에 대한 적극적 견제나 감시 소홀

Indus

손실 위험

□ 낙관적 전망하에 **해외사업 계속 운영**시 향후 추가적인 **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**, 이에 따라 **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**

○ 지질자원연구원 검증 결과 **광물공사 주요 사업의 경제성(NPV)은 공사 자체 전망과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**한 것으로 분석됨

- 이를 토대로 중장기 재무전망 산정 결과 공사 자체 전망 대비 추가 손실 확대로 **자본잠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**

⇨ 전체 해외사업의 **예상회수율**은 '15년 국정조사 당시 **83%로 전망**되었으나, **지자연 검증 결과 48%로 하락할 전망**

유동성 위험

□ 자본잠식 확대, 낮은 자산가치 등에 따른 **채무상환능력의 한계**로 인해 향후 **유동성 위험에 대한 자체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**

○ 정부지원 등 근본 대책 없이는 향후 유동성 위험이 지속될 전망

○ **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**은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부결을 통해 **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**하다는 점을 확인

□ 공사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산가치 하락 뿐 아니라 **공기업 전반의 신용도 하락** 등 **국가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이 우려됨**

공사 기능

□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, 기술·재무역량 미흡,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하면 **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**

□ 글로벌 자원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* 등을 감안하면 **공사의 자원개발 직접투자 업무수행의 당위성도 낮음**

* 자국내 특정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영기업의 사례는 있으나, 다양한 광종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영기업 사례는 없음

⇨ 정부는 **민간 중심의 광물 자원개발 지원체계**를 강화하는 한편, 정부비축 강화 등을 통해 국내 자원 수급 안정성 보완 필요

광물공사 처리방향

□ 광물공사의 처리방안에 대해 존속, 청산, 통폐합 등의 대안을 검토함

○ **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** 지속적인 자본잠식 확대와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**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**

○ **공사를 즉시 청산**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확대, 공적 기능의 유지와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

⇨ **해외자원개발 혁신 TF는 광물공사를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함**

< 해외자원개발 TF 권고 주요 내용 >

◇ **기관 통폐합**: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 검토

◇ **기능조정:**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하고 공적 기능(광업지원, 비축,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)만 유지

○ 정부는 민간에 대한 해외 광물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, 정부비축 등을 통해 국내 자원수급 안정성 보완 필요

◇ **보완대책**: 잔존부채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, 비축기능 조정방안 마련 필요

Indu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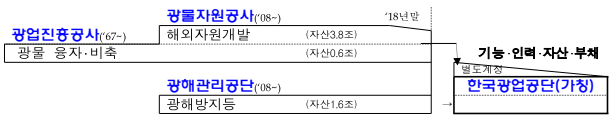
Ⅳ. 기능조정 세부방안

1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통합

1. 개요

≪1단계: 통폐합≫ ※ 연내 法개정 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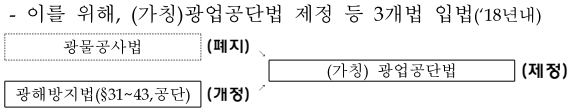
○ 광물공사 폐지, 자산·부채·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하여 통합기관 신설



① 양 기관의 모든 자산·부채 및 인력을 신설 통합기관에 이관

* 해외자원개발 관련 인력은 자산매각시까지 유지

- 이를 위해, (가칭)광업공단법 제정 등 3개법 입법('18년내)



② 이관된 해외자산·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(法定)에서 관리

* LH회계는 고유계정-토지은행계정 분리하여 자금이동 제한 (토지비축법)

≪2단계: 해외자산 매각≫

① 자산 매각시한은 명시하지 않음 (헐값매각 방지)

② 자산 매각 전문성·책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에 독립적 의사결정기구 법제화

③ 매각 의사결정 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 대행

④ 통합기관 신설 이전에도 공사가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자산정리 이행

2. 통합 기관 검토

□ 광업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, 기능 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**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 추진이 가장 효과적**

○ **(재무개선 효과)** 광해공단은 순자산(자본) 1.2조원, 금융부채(3천억)가 미미하며,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이므로 통합시 중기적 **유동성 위험 완화** 효과 기대

○ **(기능 효율화)** 광업 유관기능 통합으로 **全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**을 통한 시너지 창출 기대

- 광물공사의 **광업 탐사·개발·생산** 지원 기능과 광해공단의 **광해 방지·복구, 폐광지역** 지원 기능을 통합한 **민간지원 서비스 구축**

광물공사	광해공단
· 일반광업육성(보조) '18년 118억원 - 탐사, 개발, 생산, 안전 지원 · 해외자원개발조사(보조) '18년 21억원 · 국내융자사업('17년 잔액 2,732억원)	· 광해복구방지(출연) '17년 815억원 · 석연탄 지원(보조, 출연) '17년 2,235억원 - 탄가안정대책비, 폐광대책비, 연탄쿠폰 ·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('16년 잔액 794억원)

※ 日 JOGMEC 사례('03년 출범): 금속광업사업단을 승계, 광물 탐사·개발·생산부터 광해복구·관리, 금속비축까지 광업 전주기적 지원 프로세스 구축

- 광산 개발·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, 폐광복구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**친환경적 자원개발 및 광산안전체계 강화**

- 광물공사의 해외 네트워크와 광해공단의 기술·경험을 활용한 **해외 광해 복구·방지 사업진출** 기대

⇨ **자원보유국의 신뢰도** 제고로 **민간 해외자원개발 진출가능성 제고**

	탐사	개발·생산	비축	광해방지·폐광복구	폐광지역진흥
광물공사	기술·자금 지원 (융자·보조)		희유금속 비축·대여		
광해공단		탄가안정지원		기술지원·시설관리 자금지원	대체법인투자 융자지원

Indus

3. 세부 추진방안

1단계 : 공사폐지·통폐합

1 자산·부채 이관

○ 통합기관은 기존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**모든 자산·부채 및 권리·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**

○ **별도계정(가칭 해외자산계정)을 신설**하여 **광물공사로부터 승계한 해외자산 및 부채를 관리**

- 계정내 재원조달·지출 방식은 별도로 운영하여 제한적으로 규정 (LH 사례 준용)

* '09년 토지공사-주택공사 통합시 토지비축법에 따라 토지은행 계정 별도 설치운영
** 규정(예시): (조달) 정부출자 또는 보조, 채권발행, 해외자산계정 수익
(지출) 해외자산계정 비용, 해외자산계정 부채상환

- **광해공단의 폐광지역지원 재원**(대체법인주식, 석탄회관 등)의 해외자산계정 **부채관리 사용 제한**

2 잔존부채 처리

○ 광물공사 통폐합 후**, 필요시** 해당기관의 **부채 상환 지원**

* 광물공사법상 정부의 사채 원리금 보증 및 손실 보전 가능 조항을 통합기관 법안에 반영

- 해외 자원개발 관련 **자산 매각** 등 **강도 높은 구조조정** 지속 추진

- 해당기관 재무상태, 재정여건, 자산매각 완료 이후 잔존부채 등을 감안하여 부채 상환 지원 방안 마련

3 인력·조직 조정

○ **(인력) 해외자산 매각 완료시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인력 조정** 추진하되 세부방안은 통합추진단에서 논의

○ **(조직)** 양 기관의 사업조직은 유지, 공통조직(경영·기획 등)은 통합

- 광물공사의 해외자원본부는 **해외사업합리화본부**(가칭)로 개편하여 해외자산의 유지·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

⇒ 해외자원개발TF 활동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과 책임소재 등을 감안하여 인력 및 조직 조정에 반영

2단계 : 해외자산 매각

1 매각 원칙

○ 통합기관 설립 이후 **해외자산은 전부 매각을 원칙**으로 하되, **매각 시한은 정하지 않음** (자산가치 하락 방지)

- 국내 금속광물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의 경우 **국내 기업에 매각을 우선 고려**

○ 통합기관 설립前에도 공사는 자체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자산매각 이행

2 매각 방식

○ 자산관리 및 매각의 전문성·책임성·독립성 확보를 위한 심의·의결 기구로 산업부에 「**해외자산관리위원회**(가칭)」 설치

○ 통합기관이 승계받은 **해외자산의 매각 업무를 자산관리공사가 대행**

* 통합기관 법률상 해외자산관리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

Indus

2 기능조정 방안

1 해외자원개발 기능

○ **(통합기관)** 기존 공사의 **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기능은 폐지***하고, **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기능은 유지**

* 통합기관의 법률상 사업범위를 기존 "해외 광물자원 탐사·개발"에서 "보유중인 해외자산의 유지·관리 및 처분"으로 변경

- 공사의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활용한 **해외자원 탐사 지원, 기술 컨설팅, 유망사업 발굴·정보제공** 등 **민간지원 서비스 강화**

○ **(정부역할)**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**지원 방안마련**

- 해외자원개발 TF는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, 이를 토대로 금년중 **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** 수립

2 금속광물 비축 기능

○ 조달청과 광물공사로 분산된 **비축기능의 조정방안 조속 마련**

- 국내 금속자원 수급안정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**국가적으로 일원화된 비축계획 수립 및 비축기능 조정방안 마련**

* 에너지전환,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핵심 광물(니켈, 코발트, 리튬, 희토류 등) 중심의 비축광종 선정 및 비축물량 등 검토

< 광물공사·조달청 비축기능 개요 >

구분	광물공사	조 달 청
비축전략	• 전략비축 : 국가 비상시 대응	• 경제비축 : 물가안정 도모
소관부처	• 산업통상자원부	• 기획재정부
대상광종	• 희유금속 10광종(77,895톤)	• 희유금속 9광종(32,249톤) • 비철금속 6광종(214,005톤)
평가액	• 2,100억원	• 11,699억원
구매방출	• 전략비축 계획 • 국가 비상시에만 방출	• 매년 수요조사 후 구매 • 매년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판매

Ⅵ. 향후 추진계획

1. 입법 추진 계획

□ (주요내용) 광업공단법(가칭) 제정, 광해방지법 개정, 광물공사법 폐지

< 광업공단법(가칭) 제정 >

○ (본문) ①사업범위, ②별도계정 설치, ③부채처리 등 근거조항 규정

○ (부칙) ①광물공사법 폐지, ②설립추진위 구성, ③ 자산·부채 승계 등 통합 절차 규정

< 광해방지법 개정 >

○ 광해방지법상 광해공단 설립근거 조문(§31~43)을 삭제하고, 그 외 광해방지법 목적 및 법조항의 정합성을 고려해 법률 개정

□ (추진일정) 법률 제·개정안 마련 후 **4월 법안 발의 추진**

2. 통합기관 설립추진단 구성

□ 공운위에서 확정 이후 **통합기관 설립추진단** 구성(4월)

* (LH사례 준용) 산업부 차관(위원장), 에너지자원정책관, 에너지산업정책관, 기재부 공공정책국장, 광해공단·광물공사 임원 및 민간 전문가, 자산관리공사 등으로 구성

○ 양 기관의 통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통합 준비작업 수행

* 통합기관법령 검토 및 입법지원, 통합기관의 비전 및 경영전략 수립, 조직·정원 설계, 재무·예산·회계 통합, 각종 규정정비 등

○ **광해공단 주도 하에 통합작업** 추진